

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문화예술과

제정 2021. 5. 1 조례 제169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·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물론 마을축제 및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마을제”란 이천시 관내 통·리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자연대상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, 추모제, 목신제, 우물제, 노신제, 동화제 등의 민속행사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마을제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무형문화재, 문화재자료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 다만, 그 경우에도 제9조에 따른 사업은 시행할 수 있다.

제4조(보전계획 수립·시행)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마을제의 보전·지원 및 전승을 위하여 보전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 대상 등) ① 마을제 추진에 따른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지원 대상 마을제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통·리 또는 마을의 통·이장, 주민대표, 마을제 관련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마을제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마을제를 복원해서 거행하는 경우에는 복원 후 3년 이상 경과 후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마을제를 지정한다.

④ 마을에서는 마을제를 통하여 건전한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을제의 원형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) 마을제의 보전·지원 및 전승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1. 제4조에 따른 보전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제5조에 따른 마을제 지정에 관한 사항
3. 마을제의 보전·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마을제 관련 사항

제7조(실태조사 등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전계획 수립과 제5조에 따른 마을제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시장은 공공기관 및 법인, 단체, 통·이장 등에게 마을제 관련 자료제출 및 관련 시설 출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)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제의 거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시설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보전 및 전수활동 등) 시장은 마을제를 보전·전수하고,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, 자료집 발간, 전수교육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학술조사 연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」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6조 각호의 사항

[별지 제1호 서식]

이천시 마을제 지정 신청서 (제5조제2항 관련)

마을제명 (한 자)	()		
개최일시		개최장소	
참여인원		대표자 및 연 락 처	
○ 유 래			
○ 전년도 마을제 개최상황(헌관, 참여인원, 주요내용 등)			
「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천시 마을제 지정을 신청합니다. 20 ○ 보 존 회 명 : ○ 주 소 : ○ 대표자 성명 : (서명 또는 인) 이천시장 귀하			